

심 사 보 고 서

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

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697호
----------	-------

2017. 10. 24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17일

-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전정애 여성정책관)

가. 제안이유

-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설립일 : 2017. 2. 17.(대표이사 : 권수애) ※ 대표이사 : 비상근
- 조 직 : 29명(이사회 17, 사무처 12)
 - 이 사 회 : 이사 15명(이사장 : 도지사), 감사 2명
 - 사 무 처 : 12명(사무처장, 2팀 1센터)
- 출연계획 : 1,223백만원(재단운영비) ※ 인건비 458, 경상적경비 232, 사업비 533

(단위: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7년			2018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1,135,000	300,000	835,000	1,223,300	923,300

○ 주요기능

-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연구·개발 사업
-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사업
- 여성의 문화 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- 양성평등,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-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)

○ 법적근거의 적정성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,
- 동 계획안의 출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) 및 같은 법 제20조(재정지원),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」 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 및 같은 법 제8조(재정지원 등)에 따라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, 출연계획안의 법적 절차는 적정함.

○ 종합의견

- 충북여성재단은 충북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성·다양성·전문성을 가진 민간 주도로 일·가정 양립정책 등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개발·연구 및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(Think tank)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따라서,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양성평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**충북여성재단에** 대하여 충청북도가 **출연을 할 것인**지에 대한 판단은 동 재단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와 관련된 **정책적 판단으로** 재단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에 대한 출연은 관련규정에 따라 가능한 사항임.

- 다만, 출연은 충청북도지사가 재정규모, 국가정책과의 연계성,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, 지방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,
-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등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.
- 아울러,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.

〈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내역〉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합계	주 요 내 용	비고
합 계	1,223		
인건비	458	- 사무처 직원 9명 급여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금)	
기본경비	232	- 복리후생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- 업무추진비, 일반보상금, 1주년 학술심포지엄	
사업비	533	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	

참고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 및 관련규정 발췌

1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

(단위:천 원)

구 분	합계	주 요 내 용	비고
합 계	1,803,892		
국 비	316,796	○ 위탁 운영 · 1366충북센터 운영 : 232,296천원 ·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: 84,500천원	'17년 수준
도 비	1,485,596	○ 출연금(재단운영) : 1,223,300천원 ○ 1366충북센터 운영 : 262,296천원	
사업수입	1,500	○ 교육비 수입 : 1,500천원 ○ 수탁용역 : 미확정	

2 관련규정 발췌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- 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1. 설립 목적
 2. 주요 업무와 사업
 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 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」

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한 “도” 라 한다)의 출연금
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
3. 제9조에 따른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8조(재정지원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」 1부.

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

의 안	697호
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17. 9. 29.

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☐ 출연목적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하였으며('17. 2. 17),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☐ 출연 예정금액 : 1,223,300천원(도비100%)

- 출연근거 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- 산출근거
 - 재단 운영비 : 1,223,300천원(인건비 및 경상비, 사업비)

☐ 출연계획 (단년 · 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7년			2018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1,135,000	300,000	835,000	1,223,300	923,300

1 출자·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여성정책관 성주류화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전정애	장기봉	송현숙	220-3922

기 관 명

충북여성재단

출자·출연대상

○ 이 사 장 : 이시종

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(현원/정원) 13/13
(주요사업)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·가족 역량강화 교육
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, 성주류화 과제 컨설팅

출자·출연
사 업 비

○ 출자·출연 예정금액 : 1,223,300천원(도비 100%)

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사업기간	2017년 예산액	2018년 요구액*	재원별				
				계	국 비	도비	시·군 비	기타
계		1,135	1,223	1,223		1,223		
기본재산	3~12월	100						
재단운영비	3~12월	1,035	1,223	1,223		1,223		

출자·출연
필 요 성

○ 지역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

근거·법령

○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

※ 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지도감독
부서의견
(중 평)

○ 2017년 2월 설립한 충북여성재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내외 여성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

○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한 여성·가족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교육·연구를 비롯한 충북 여성의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.

○ 특히, 2018년도에는 도내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와 일·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캠프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.

첨부자료

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조직표, 인력현황 등)

3. 출연사업계획서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(경영평가)

- 설립 후 1년이 지난 후 경영평가 실시 예정

○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

- 재정사업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의 연구·개발과 충북여성의 능력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.
- '17년은 출범 초기 재단 조직의 초기 정착 시기였으며, '18년은 충북여성재단의 안정화와 여성의 권익증진, 교육·연구,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도약할 시기임.
- 특히, 도내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와 일·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캠프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을 통하여 충북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함.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	2017년 예산액(최종) (C)	2018년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합 계	1,135,000	1,223,300	1,223,300		88,300
기본재산	100,000				△ 100,000
재단운영비	1,035,000	1,223,300	1,223,300		188,30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2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북여성재단

설립근거	- 민법 제32조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				전화번호 : 043-285-2421		
주요연혁	- '17. 2. 17 : 충북여성재단 설립			기관형태	출연기관(재단법인)		
인원현황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16		12		4		
임원구성	이사장	이○○	충청북도지사			재임기간	
	당연직이사	권○○	충북 여성재단 대표이사			재임기간	
	당연직이사	서○○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		재임기간	
	선임직이사	백○○	한국교원대학교 교수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선임직이사	소○○	충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장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선임직이사	손○○	충북여성미술작가회장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선임직이사	연○○	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선임직이사	오○○	충북여성행복지원단 회장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선임직이사	오○○	대한미용사회충북지회장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선임직이사	유○○	동양일보 상임이사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선임직이사	이○○	한국결스카웃충북연맹장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선임직이사	이○○	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선임직이사	정○○	충북여성연대 공동대표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선임직이사	최○○	진천여성단체협의회장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선임직이사	한○○	충북간호사협회장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	당연직감사	전○○	충청북도 여성정책관			재임기간	
	선임직감사	신○○	회계사			2017. 02. 17 - 2019. 02. 16	
조직	이사장(도지사) 대표이사(비상근) 이사(13명) 감사(2명) 사무처장(1명) 정책연구팀(5명) 교육운영팀(6명)						
주요기능	- 여성정책연구·개발,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사업,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100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1,135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5	2016	2017	재무현황 (백만원) '16.12.31기준	자산	-
	예산액	-	-	1,659		부채	-
	지자체 지원액	-	-	1,135		자본	-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6.12.31.기준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이익
	-				-		-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여성재단 출연	구분	출자	
주관부서	여성정책관		출연	1,223,300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, 민관 소통 역할 수행
-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의 중심(허브)기능 수행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여성재단 운영
- 사업기간 : 2018. 1월 ~ 12월
- 출연금액 : 1,223백만원(도비 100%)
- 주요내용 : 충북여성재단 교육 및 연구사업, 성평등·일자리 사업
- 출연근거 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비고
합계	1,223		
운영재원	1,223		
인건비	458	- 사무처 직원 9명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)	
경비	232	- 복리후생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일반보상금, 1주년 학술심포지엄, 집기구입 등	
사업비	533	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	

□ 기대효과

- 지역 여성들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·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
- 여성·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충북여성재단은 금년도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생 재단으로,
- 도비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재단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, 도비 출연금은 재단 존립을 위한 필수 조건임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